# 더샵 송도그란테르 G5-3블록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

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

## 1 단지 주요정보

| 주택유형 | 해당지역 | 기타지역 | 규제지역 여부 |
|---|---|---|---|
| 민영 | 인천광역시 거주자 | 서울특별시, 경기도 거주자 | 비규제지역 |

| 재당첨제한 | 전매제한 | 거주의무기간 | 분양가상한제 | 택지유형 |
|---|---|---|---|---|
| 없음 | 6개월 | 없음 | 미적용 | 민간택지 /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|

## 2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

| 구분 | 특별공급 | 일반공급 1순위 | 일반공급 2순위 | 당첨자발표 | 서류접수 | 계약체결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정 | 2026.05.19.(화) | 2026.05.20.(수) | 2026.05.21.(목) | 2026.06.02.(화) | 2026.06.03.(수) ~ 2026.06.07.(일) | 2026.06.13.(토) ~ 2026.06.16.(화) |
| 방법 | •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 ~ 17:30)<br>• (현장접수) 사업주체 견본주택 | •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 ~ 17:30)<br>• (현장접수) 청약통장 가입은행 | | • (PC·모바일) 청약홈 | • 사업주체 견본주택<br>-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(송도동 37-2) | |
| | • 경로 : 청약홈 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청약신청 → APT →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→ 청약자격 등 입력 →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→ 완료 | | | | | |

##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

▣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-9834 (2026. 5. 6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
▣ 공급위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-12(G5-3BL)

▣ 공급규모 : 지하2층~지상41층 1개동, 아파트 총 85세대[특별공급 25세대(기관추천 2세대, 경제자유구역 7세대, 다자녀가구 7세대, 신혼부부 6세대, 노부모부양 1세대, 생애최초 2세대) 포함] 및 부대복리시설

▣ 입주시기 : 2030년 1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
▣ 공급대상

(단위 : ㎡, 세대)

| 주택 관리번호 | 모델 | 주택형 (전용면적 기준) | 약식 표기 (타입) | 주택공급면적 | | | 기타 공용 면적(지하 주차장등) | 계약 면적 | 세대별 대지지분 | 총공급 세대수 | 특별공급 세대수 | | | | | | | 일반 공급 세대수 |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주거 전용면적 | 주거 공용면적 | 소계 | | | | | 기관 추천 | 경제자유 구역 | 다자녀 가구 | 신혼 부부 | 노부모 부양 | 생애 최초 | 계 | | |
| 2026 000165 | 01 | 084.2300K | 84K | 84.2300 | 33.1354 | 117.3654 | 68.9272 | 186.2926 | 42.2879 | 27 | 2 | 2 | 2 | 6 | - | 2 | 14 | 13 | - |
| | 02 | 118.2300K | 118K | 118.2300 | 46.3275 | 164.5575 | 96.7502 | 261.3077 | 59.3577 | 54 | - | 5 | 5 | - | 1 | - | 11 | 43 | - |
| | 03 | 129.4600K | 129K | 129.4600 | 54.2340 | 183.6940 | 105.9414 | 289.6354 | 64.9958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1 | - |
| | 04 | 188.7900K | 188K | 188.7900 | 77.0811 | 265.8711 | 154.4926 | 420.3637 | 94.7851 | 2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2 | - |
| | 05 | 198.2300K | 198PK | 198.2300 | 79.4731 | 277.7031 | 162.2182 | 439.9213 | 99.5245 | 1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1 | - |
| 합계 | | | | | | | | | | 85 | 2 | 7 | 7 | 6 | 1 | 2 | 25 | 60 | - |

※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신청 시('청약홈') 구분 표기이며,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/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,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공급금액

(단위 : 원, 부가가치세 포함)

| 주택형 (약식표기) | 84K | 118K | 129K | 188K | 198PK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최저가 | 1,203,000,000 | 1,724,000,000 | 2,114,000,000 | 3,093,000,000 | 3,279,000,000 |
| 최고가 | 1,264,000,000 | 1,812,000,000 | 2,114,000,000 | 3,155,000,000 | 3,279,000,000 |

※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

▣ 납부일정

| 계약금(5%) | | 중도금(60%) | | | | | | 잔금(35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차 | 2차 | 1차(10%) | 2차(10%) | 3차(10%) | 4차(10%) | 5차(10%) | 6차(10%) | |
| 계약 시 | 계약 후 30일 이내 | 2026.12.28 | 2027.05.28 | 2027.10.28 | 2028.09.25 | 2029.02.23 | 2029.07.23 | 입주지정일 |

▣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

| 구분 | 금융기관명 | 납부계좌 | 예금주 |
|---|---|---|---|
| 분양대금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 | 경남은행 | 207-0219-5695-01 | 케이비부동산신탁㈜ |

- 상기 지정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[동·호수, 공급신청자(계약자) 성명으로 입금]하고 무통장 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. (무통장 입금 시 예시 : 101동 101호 홍길동 계약자일 경우, 입금자명을 '1010101홍길동'으로 기재)
- 분양대금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.
-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, 계약자는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.(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,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.

##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공급기준 | 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<br>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 다만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 |

| 구분 | | 처리방법 |
|---|---|---|
|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| |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|
|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|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|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<br>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|
| |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| 모두 부적격 처리 |

| | |
|---|---|
|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<br>■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<br>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. |
| 무주택 요건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br>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<br>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주 요건 |

### 4-1 기관추천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)

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 : 2세대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<br>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(단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.<br>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<br>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(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 |

### 4-2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8조)

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 : 7세대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<br>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1.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.<br>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.<br>3.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, 대상자(당첨 확정자 또는 예비자)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(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) |

### 4-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0조)

공급 세대수의 10% 범위 : 7세대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<br>-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<br>■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(태아, 입양자녀 포함)이 있는 분<br>-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,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<br>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■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지역 → ②배점 → ③미성년 자녀수 → ④청약신청자의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분 → ⑤추첨<br>■ ①지역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·도(인천광역시) 거주자 50% → 기타지역(서울특별시 및 경기도) 거주자 50% |

### 4-4 신혼부부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)

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% 범위 : 6세대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<br>■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)인 분<br>■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<br>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한 분 |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당첨자 선정방법 | ■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소득구분 → ②순위 → ③지역 → ④미성년 자녀수 → ⑤추첨<br>■ ①소득구분 |

| 단계 | 소득구분 | 내용 |
|---|---|---|
| 1단계 | 신생아 우선공급(25%)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)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분(맞벌이인 경우 120% 이하) |
| 2단계 | 신생아 일반공급(10%)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)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% 초과 140% 이하인 분(맞벌이인 경우 160% 이하) |
| 3단계 | 우선공급(25%) |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분(맞벌이인 경우 120% 이하) |
| 4단계 | 일반공급(10%) |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% 초과 140% 이하인 분(맞벌이인 경우 160% 이하) |
| 5단계 | 추첨공급 |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% 초과하나(맞벌이인 경우 160% 이하)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인 분 |

※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,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,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
※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→ ④미성년 자녀수 →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
※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(인천광역시 거주자) 거주자 50% → 기타지역(서울특별시, 경기도) 거주자 50%에게 우선공급하고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

■ ②순위

| 순위 | 내용 |
|---|---|
| 1순위 |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태아, 입양자녀 포함)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|
| 2순위 |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|

■ ③지역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(인천광역시) 거주자 50% → 기타지역(서울특별시, 경기도) 거주자 50%

### 4-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)

공급 세대수의 3% 범위 : 1세대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-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<br>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한 분<br>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-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■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<br>■ ①지역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(인천광역시) 거주자 50% → 기타지역(서울특별시, 경기도) 거주자 50%<br>■ ②가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(가점제 적용기준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-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<br>※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<br>-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<br>※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|

### 4-6 생애최초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3조)

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 세대수의 9% 범위 : 2세대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<br>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-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<br>※ (예외)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처분한 주택소유 이력은 배제합니다.<br>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(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br>■ 아래 '가' 또는 '나'에 해당하는 분<br>- 가.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,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가 있는 분<br>- 나. 1인 가구 (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)<br>*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, '단독세대'와 '단독세대가 아닌 분'으로 구분됨<br>* '단독세대'란, 단독세대주이거나,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,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※ 본 단지는 전용면적 60㎡ 초과 공급 단지로서 단독세대 신청이 불가함<br>* '단독세대가 아닌 분'이란,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<br>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*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**한 분<br>* 과거 1년 내에 소득세(「소득세법」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)를 납부한 분을 포함<br>**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|
| 당첨자 선정방법 | ■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소득구분 → ②지역 → ③추첨<br>■ ①소득구분 |

| 단계 | 소득구분 | 내용 | |
|---|---|---|---|
| 1단계 | 신생아 우선공급(15%)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)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인 분 | |
| 2단계 | 신생아 일반공급(5%)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)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초과 160% 이하인 분 | |
| 3단계 | 우선공급(35%) |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인 분 | |
| 4단계 | 일반공급(15%) |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초과 160% 이하인 분 | |
| 5단계 | 추첨공급 |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|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인 분 |
| | | 1인 가구 |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% 이하이거나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인 분 |

※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,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,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
■ ②지역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(인천광역시) 거주자 50% → 기타지역(서울특별시, 경기도) 거주자 50%

## 5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)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서울특별시, 경기도)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<br>■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|
| 청약통장 자격요건 | 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<br>- 1순위<br>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<br>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<br>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<br>- 2순위 :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|

[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]

| 구분 |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| 그 밖의 광역시 |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|
|---|---|---|---|
| 전용면적 85㎡ 이하 | 300만원 | 250만원 | 200만원 |
| 전용면적 102㎡ 이하 | 600만원 | 400만원 | 300만원 |
| 전용면적 135㎡ 이하 | 1,000만원 | 700만원 | 400만원 |
| 모든 면적 | 1,500만원 | 1,000만원 | 500만원 |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
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당첨자 선정방법 | ■ 당첨자 선정 순서<br>- 1순위 가점제 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<br>- 1순위 추첨제 : ①지역 →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→ ③추첨<br>- 2순위 : ①지역 → ②추첨<br>■ ①지역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(인천광역시) 거주자 50% → 기타지역(서울특별시, 경기도) 거주자 50%<br>■ ②가점 -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/추첨제 적용비율 |

| 구분 | 가점제 | 추첨제 |
|---|---|---|
| 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 | 40% | 60% |
| 전용면적 85㎡ 초과 | - | 100% |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,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.
※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,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.

## 6 기타사항

▣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

(단위 : 원, 부가가치세 포함)

| 구분 | 건축감리 | 전기감리 | 소방감리 | 통신감리 |
|---|---|---|---|---|
| 회사명 | 시아플랜 건축사무소 | ㈜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| ㈜이룸이앤씨 | ㈜이룸이앤씨 |
| 금액 | 1,090,100,000 | 264,000,000 | 120,313,600 | 102,671,250 |

※ 상기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(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)

▣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

| 구분 |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사 | 시공업체 | 시행위탁사 |
|---|---|---|---|
| 회사명 | 케이비부동산신탁㈜ | ㈜포스코이앤씨 | 송도국제도시개발(유) |
| 주소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(역삼동) |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(죽도동) |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, 상가 에이동 3층(송도동, 더샵 센트럴파크2) |
| 법인등록번호 | 110111-1348237 | 174611-0002979 | 110114-0037603 |

※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중요 사항만을 게재하였으며, 청약자는 필히 입주자모집공고(전문)을 숙지하여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. ※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)

■ 분양홈페이지 : https://더샵송도그란테르.kr
■ 견본주택 위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01 (송도동 37-2)

1600.0255

아파트 1,544세대 84㎡~198㎡PH | 오피스텔 96실 84㎡ | 판매시설

시행/수탁 KB부동산신탁(유) 위탁 송도국제도시개발(유) 시공 (주)포스코이앤씨